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0조제3항 관련)”을 “(제1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응시자격 기준
1.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p>2. 2급 청소년지도사</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p> <p>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 <p>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필수영역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p>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p>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대학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검정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것 3)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	---

별표 1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1의2에 따른 이수과목 이수,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 이수 및 같은 표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대학·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과 후의 이수를 모두 포함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표의 청소년수련관의 배치기준란 중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를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의 청소년수련원의 배치기준란의 1) 중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를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청소년지도사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구분	영역	이수과목
1. 대학 또는 대학원	가.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나.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2. 전문대학	가.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나.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1. 1급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연구방법론 나. 청소년 인권과 참여 다. 청소년정책론 라. 청소년기관 운영 마. 청소년지도자론	객관식 필기시험
2. 2급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육성제도론 나. 청소년지도방법론 다. 청소년심리 및 상담 라. 청소년문화 마. 청소년활동 바. 청소년복지 사.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 청소년문제와 보호 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서류 심사

비고

1.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과 관련된 인정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3.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시간은 1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기관의 요건, 선정·취소의 기준 및 실습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